##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46 발의연월일: 2021. 6. 7.

발 의 자:이명수・金炳旭・김태흠

서병수・성일종・이만희

이 영ㆍ이주환ㆍ정동만

최연숙・최춘식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반면, 전국 1,3 00여개의 금고에서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한선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4조제3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을 "중소기업중앙회 및"으로 하며, 같은 조제7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및 「사람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및 「사람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기의로,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로 하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를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합장선거"를 "제1호에 따른 선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합으로부터"를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

고법」 제1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으로,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로, "조합운영"을 "조합 또는 금고운영"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을 "조합장·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중앙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라 한다)"를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 (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이라 한다)"로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 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합과"를 "조합 및 금고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를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으로,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조합과"를 "조합 또는 금고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 탁에 관한 적용례)이 법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 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u>중앙회 및</u>	<u>중앙회, 「산</u>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	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u>히</u>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
	른 금고와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나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u>중소기업중앙회</u>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u> </u>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	
원회	
다. • 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동시조합장선거"란 <u>「농업</u>	7 <u>「농업</u>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 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u>조합장선거</u>를 말한다.

8. (생략)

-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 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 합법」에 따른 <u>조합장선거</u> (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 14일
  - 2. 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 ② (생략)
-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저 ·② (생 략)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 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 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_「새	마을금고	법」		
		 -조학	 합장선거	 및
	· <u>장선거</u>			
8. (현	행과 같음	)		
· 13조(신	넌거기간)	1 -		
1				
			조합장	선거
<u>(이</u> 호	가 "조합?	왕선?	거"라 즉	한다)
<u>및</u>	「새마을금	급고병	법」에	따른
이사	<u>·장선거</u>			
2. <u>제1</u> .	호에 따른	- 선	거	
				-
<u> </u>	행과 같은	,	-) )	\
	선거인명투		삭성 등	) (1)
	현행과 길	告)		
3				
			<b></b>	

복사본을 해당 <u>조합으로부터</u>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생략)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저 방법) ①·② (생 략)
  -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 작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 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u>조합장선</u>

소압 또는 금	<u> </u>
로부터	
<u>.</u>	
④ (현행과 같음)	
세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u>조</u>	합
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	<u>는</u>
<u>이사장선거</u>	
2	
조합장	<u>선</u>

<u>거</u>: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 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 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및 「수산 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 ·제28조·제29조·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 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2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u>조합장</u> 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 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 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 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 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

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	
조제5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	
 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3「수산	
<u> </u>	
금고법 <u></u>	
口七日]	
<u>조합장선거와 「새</u>	
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	
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	
출하는 이사장선거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조합장	
선거ㆍ이사장선거	

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ㅈ (생 략)
  - ⑤ 「농업협동조합법」,「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u>조합장</u> ·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 에 따른 <u>조합장</u>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 지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조합 또는 금고운영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조합장</u>
·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
금품 제공제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u> 금고 · 중앙회</u>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기부행위로 본다.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저 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 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 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 • 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 구가 아닌 구와 읍 · 면 · 동 등 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 을 말한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세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의 설치 등) ①
는 금고와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 저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인명부 작성・확정,투표 및 개표에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u>조</u> <u>합장선거</u>에서는 제15조·제1 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선거 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 부"로 본다. 다만, 제15조제3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생략)
-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의 선거인은 제2호
   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 4. 제4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5. 6. (생략)

에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
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
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
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이
라 한다)
,
1 <u>圣</u>
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
2. (현행과 같음)
3
<u>조합 또는 금고</u>
4
<u>조합 및 금고와</u>
 5 · 6 (혀해과 간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	
원회는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재선거, 보궐선	
거,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u>조합과</u>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생	저
략)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u>조합과</u> 그 중앙회	

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②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u> 조합장선거 등</u>
	는 금고와
제	78조(선거관리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조합 또는 금고와</u>
	③ ~ ⑦ (현행과 같음)